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2. 4 선고 2023가단5380138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 등]

전 문

원고A단체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진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8. 14.

판결 선고2024. 12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7,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3. 15.부터 2024. 1. 12.까지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1) 2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별지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박종택

별지

1) 2024. 1. 12.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이다.